

2023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 석·박사 연구수행 분야 신청 요강

3차 공모

2023. 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재혁신센터

I. 사업 개요

1. 목적

- 이과계열 장애 석·박사 대상 정부(국가)연구기관에서의 개인연구 수행 기회를 제공, 전문연구역량 개발 및 유능한 대학원생 발굴·육성

2. 추진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3. 수행 기관

-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기인력 재교육 기관
- 공동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원의 총괄 기관

4. 추진 경과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계획 확정('21.9월)
 - ※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사업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으로 명명
- '22년 장애 석·박사생 지원사업 착수('22.7월)
 - 선발 : 총 7명 (석사과정생 6명, 석사졸업생 1명)

II. 사업 내용

가. 일반사항

□ 신청자격 및 분야

- (신청 자격) 이공계열 장애인 대학원생 또는 출연(연) 계약직 연구원
 - (장애인) 장애유형과 장애수준 무관,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 (대학원생)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 출연(연) 학생연구원(UST학생, 학연협동과정학생, 기타연수학생)도 포함
 - (출연연 계약직) 정부 출연(연) 소속 인턴, 포닥, 위촉 연구원 중 장애인
 - ※ 사업 취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비정규직 장애인에 국한
 - (재지원자) '22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 선정 대학원생
- (신청 제한) 취업자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 (취업자) 정부 출연(연) 외 고용계약 체결자로서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 신청 불가
 - ※ 연구착수일 전 퇴사시 지원가능
 - (제한자) 지원자인 석·박사생 및 연구지도자(대학, 출연(연))가 국가 R&D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 공모 마감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 규모 : 0명 내외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7. 3(월) 10:00 ~ 2023. 7. 14(금) 18:00
- (제출서류) 연구계획서, 연구지도자(교수, 출연(연) 연구자) 협약서,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재학 및 학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사본), 연구실적증명원(재지원자)
- (제출방법) 이메일(support@kird.re.kr) 접수

- (재학생) 소속대학 산학협력단 명의 신청 공문 첨부
 - ※ 공문내용은 첨부 1 참조
- (수료/졸업생/출연연 소속)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공문 불필요

나. 개인연구 관련 사항

□ 원칙

- (연구과제) 전문 연구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에 따라 본인이 직접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 계획 수립
 - 어떤 형태든 기 발표 및 '23년 발표 예정인 된 연구주제는 불가
- (연구수행) 반드시 국·공립,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원 등에서 일정기간 연구수행 필수
 - 사실상 대학 랩 위주의 연구수행 및 출연(연) 연구참관 형태 불인정

□ 외부 전문연구기관 매칭

- (매칭이유) 대학 외 전문연구기관의 장점인 ①첨단 연구장비 활용, ②전공분야별 다양한 연구방법 학습, ③국가R&D수행방법 터득 등을 통해 “전문연구자로서 필요한 R&D역량” 제고
- (대상기관) NST 산하 출연(연), 국가연구소, 정부 및 지자체 공공 연구기관 등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전문연구기관
 - ※ 대학 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는 불가
- (매칭 방법) 공모시 매칭 연구기관의 지정여부에 따라 사전지정과 사후지정 구분
 - (사전지정) 신청자가 전문연구기관 연구자와 연구수행 관련 협의를 완료한 경우, 연구계획서에 현장연구 수행 내용 기재 후 제출
 - (사후지정) 신청자가 응모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연구 내역만 연구계획서에 명기 후 제출
 - ※선정 후 전문연구기관 매칭 가능(KIRD 매칭 지원 예정)

□ 세부사항

○(연구구분) 대학원 재학 여부에 따라 ①**대학-출연(연) 공동연구지도형**,

②**출연(연) 단독지도형** 중 선택

- (공동연구지도) 재학생 대상 대학 지도교수와 전문연구기관 연구자가 분담하여 연구설계,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분석 등 지도

- (단독연구지도) 수료생 및 졸업생 대상 매칭된 전문연구기관 연구자가 전체과정에 대해 연구지도 수행

※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 및 인턴** 경우, 단독연구지도에 해당

○(연구기간) **최소 3개월 ~ 최대 4개월**

- (필수기간) 단순 연구참관을 방지하고, 연구수행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을 필수연구 기간**으로 지정

- (기간선택) 3개월 이상 4개월 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연구특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연구기간 선택 가능

- (적합여부) 연구주제와 수행방법, 학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시 연구기간의 적정성 여부** 판정

※ 평가 시 연구기간 조정의견이 제시된 경우, 연구기간 보완 필요

○(연구일자) **학업 및 건강 등을 감안, 주단위 5일~ 3일 중 선택 가능**

- (수행율) 주 5일을 기준으로 투입율 100%, 주 4일은 80%, 주 3일은 투입율 60% 산정

- (연구기간내 수행율) 월단위로 주 단위 연구수행일 변경 가능

※예시 : 연구 1~2개월은 주 5일, 연구 3~4개월은 주 3일, 연구 종료월은 주 4일 등

- (인건비 산정 기준) 주 단위 수행율 비율에 따라 인건비 계상

※수행율은 연구노트 작성 기록에 따라 연구일자를 확인 후 수행율 산정

○(연구시간)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형태별 최소 연구시간 준수

- (공동연구) **일 5시간** 연구를 원칙, **최소 3개월**은 집중연구형태로 **주 4일**, 4개월 이상은 주 3일을 최소 연구시간으로 지정

3개월	4개월	비고
240시간	240시간	질병, 경조사 등 상당한 이유로 인정될 경우 예외 인정
일 5시간 × 주 4일 × 4주 × 3개월	일 5시간 × 주 3일 × 4주 × 4개월	

-(시간배분) 사업 취지에 따라 대학 대비 전문연구기관에서의 연구시간을 많게 책정, **대학 30~35%, 출연(연) 65~70%** 준수 요구

	3개월	4개월	비고
총 연구시간	240시간	240시간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 및 계약직의 경우 소속기관 규정 적용
대학(지도교수) (30~35%)	72~84시간	72~84시간	
출연(연) (65~70%)	156~168시간	156~168시간	

※연구특성상 연구시간 배분 원칙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선정평가시 심사위원의 가부 결정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단독지도) 연구여건을 감안, 주 28시간, 5일 투입을 정형화

3개월	4개월	비고
336시간	448시간	출연(연) 소속 지도자의 경우, 자체 규정 적용 가능
주 28시간 × 4주 × 3개월	주 28시간 × 4주 × 4개월	

다. 선정평가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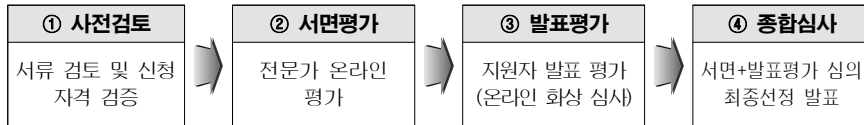
□ 평가 원칙

○(평가 이원화) 신규지원자와 재지원자의 평가 구분, 사업 취지에 따라 **공정 평가 추구**

□ 평가 절차

○(신규지원자)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사 등 4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

- (사전검토) 신청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탈락 처리
- (서면평가) 연구계획의 충실성, 연구내용의 타당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평가
- (발표평가) 연구필요성,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의지 등 평가
- (종합심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적격자 선정



○ (재지원자) 연구실적,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사 등 4단계 평가
 - (연구실적) '22년 완료 연구성과 및 '23년 진행 연구성과를 정량 계산, **합산점수 4점 이상자**에 한해 평가 진행

R&D 성과지표	세부내용	점수
1. 학술지 게재 논문 (국내/국외)	등재지, 등재후보지	8
2.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SCI(SCIE), SSCI, IEEE, AHCI 등	15
3. 학술회의 발표 논문(국내)	학회 학술발표(※ 온라인 포함) 구두 발표	4
	포스터 발표(박사)	1
	포스터 발표(석사)	3
4. 학술회의 발표 논문(국외)	구두 발표	6
	포스터 발표(박사)	1.5
	포스터 발표(석사)	4
5. 번역·저술, 교재	기술서, 저서, 번역서	5
6. 연구개발 관련 홍보 건수	TV, 신문 등 언론보도, 기고(저널, 기술기사), CEO Brief, 연구 Brief	5
7. 정부, 민간 및 국내외 학회 포상 건수	일반포상	5
	학회우수상(논문)	3
	학회우수상(포스터)	2
8. 특허출원 건수(국내/국외)	특허출원	5
9. 특허등록 건수(국내/국외)	특허등록	8
10. 실용신안 건수	실용신안(디자인, 상표 및 의장 포함)	4
11. 신기술등록 건수	신기술, 환경신기술 등	8

- (서면평가) 연구계획의 충실성, 연구내용의 타당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평가
- (발표평가) 연구필요성,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의지 등 평가
- (종합심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적격자 확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자 역량	- 연구자의 전공과 해당 연구수행주제가 관련성이 있는가?	5
연구계획 충실성	- 연구계획서는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성되어 있는가? -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15
연구내용 타당성	- 연구 방법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가? - 연구 과제의 내용과 연구 수행 계획이 적절한가??	20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기간은 연구수행에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연구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정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10

○ (발표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필요성	-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신청자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5
연구 역량 및 의지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학업 활동을 고려할 경우,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구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동기가 있는가?	20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 (재학생) 학업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한가? - (졸업생) 제안한 연구가 향후 본인의 진로와 학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연구 지도자 역량	- 연구지도교수의 지원 의지 및 연구지도 계획은 합리적인가?	10

○ (적격기준) 서면+발표평가 합산 60점 이하시 “부적격” 처리

□ 동점자 처리

- (1차판정) 발표평가 “연구역량 및 의지” 항목 다득점자
- (2차판정) 서면평가 “연구내용 타당성” + 발표평가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합산 후 평균점수 다득점자

라. 지원사항

□ 원칙

- (지원총액)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인건비, 연구지도 수당, 연구개발비 등 지급
- (지급근거) 연구수행 협약(다자간 계약)

□ 세부 내용

- (인건비) 주 5일 연구수행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
 - (기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상 학생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총액을 고려하여 일부 상한액 운용
 - ※'23년 학생인건비(참여율 100%) :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
 - (지급) 연구참여 일수별로 계상 지급(후불)

(단위 : 만원)

대상	연구수행일 (1주 당)	1개월	2개월 (누계)	3개월 (누계)	4개월 (누계)
석사생 (석사수료)	5일(100%)	220	440	660	880
	4일(80%)	176	352	528	704
	3일(60%)	132	264	396	528
박사생 (박사수료)	5일(100%)	300	600	900	1,200
	4일(80%)	240	480	720	960
	3일(60%)	180	360	540	720

○(연구지도수당) 연구장소 및 연구수행일을 기준으로 계상

- (월별 지도횟수) 연구장소에서 수행한 주간 연구일수를 기준으로, 5일은 월 5회, 4일은 월 4회, 3일은 월 3회, 2일 이하는 2회로 인정
- ※(예시) 주 5일 연구수행을 대학 2일, 전문연구기관 3일로 나누어 할 경우, 대학 월 2회, 전문연구기관 월 3회로 산정

- (지도수당 단가) 회당 2시간, 시간당 5만원으로 계상

- (수당 지급) 연구노트 상 연구지도 서명을 확인 후 수당 지급(후불)

(단위 : 만원)

연구수행	연구지도	1개월	2개월 (누계)	3개월 (누계)	4개월 (누계)
주 5일 수행	월 5회	50	100	150	200
주 4일 수행	월 4회	40	80	120	160
주 3일 수행	월 3회	30	60	90	120
주 2일 이하	월 2회	20	40	60	80

○(특별지도수당) 연구수행 결과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연구지도자에게 보고서 지도 수당 지급

- (지급) 2회 지도(초안검토, 최종검토)가 통상적임에 따라 회당 20만원씩, 대학과 전문연구기관 연구지도자에게 각각 40만원 지급

○(간접비) 인건비와 연구지도수당(특별지도 포함) 합산금액의 5%

- (대상) 공동연구형태로서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경우로 한정

○(연구개발비) 지원금 총액에서 인건비+연구지도수당(특별지도 포함)+간접비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산정

- (산정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매뉴얼에 따라 산정
- (미사용 비용)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미사용 연구개발비는 반환을 원칙

○(기타 지원) 연구기간 내 상해보험 가입, 장애보조 장비 등 연구수행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속인성 비용 지원

※추가 지원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KIRD 내부 심의기구에서 최종 결정 예정

□ 지원 중단

- (환수사항) 연구자, 연구지도자의 불성실로 연구수행 및 연구지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액 환수**(기 지급액 포함)
 - (연구불성실) 전체 연구수행시간 50% 이내에서 상당한 이유*없이 연구 미수행 또는 중단시
 - *상당한 이유 : 질병, 부모상, 취업 등
 - (지도불성실) 월 연구지도시간 50% 미만 상태가 2월 이상 지속 경우
- (중단심의) 별도 심의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구성, 지원 중단 여부 결정
 - (소명권보장) 중단 대상자에 대해 소명 기회 제공 및 청취
 - (의결정족수)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시 안건 가결
 - *심의위원 : 7명 이내 KIRD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특례 사항

- (출연연 내부규정)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 및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자체 내부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연구비 조정 및 편성 가능

라. 사업 관리 항목

- (관리원칙) 학생연구원 신분임을 감안, **별도 평가단계 없이 연구노트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로 대체**
 - (연구 노트) 연구자는 당일 연구수행 내용을 “전자 연구노트”로 기록하고,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확인 서명 의무(출석부 대체)
 - *질병, 사고입원, 해외 출장 등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인정
 - (결과보고서) 연구종료 후 1개월 내 제출, 연구자 및 연구지도자 전원 서명 필요
 - ※연구지도자 서명이 없을 경우, 특별지도수당 미지급
 - (우수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평가 후 우수작에 대해서는 포상 예정
- (연구윤리) 연구노트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적발시, **전액 환수 처리**

마. 인력양성 지원

□ 교육 지원

- (사전교육)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과목 위주
 - (과목) 연구노트 작성법, 연구실 안전, 연구윤리, 연구비 관리 등
 - (이수) 연구수행 착수 전 이수 완료, **미이수시, 연구 협약 보류**
 - (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전문역량) R&D 전주기 분야 전문교육 위주
 - (과목) 연구개발 제안서, 영어학술논문 작성법, 특허 출원법 등
 - (기간) 연구수행기간 중 자율 수강(무상)

□ 경력개발 지원

- (진로계획) 진로 컨설팅, 진로정보 제공 등 1:1 맞춤형 지원
 - (컨설팅) KIRD 연구자 역량진단을 통해 진로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
 - (진로정보) 출연(연) 학생연구원 및 인턴 채용 정보 등 실시간 제공
- (경력개발) 경력설계 및 경력개발 멘토링 지원
 - (경력설계) KIRD 경력설계 교육과정 무료 이수
 - (멘토링) 각 분야 전문가 및 장애인 연구자의 경력개발 멘토링 제공

바. 추진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23. 7. 17	사전검토 및 연구실적 평가	부적격자 탈락
23. 7. 18~19	서면평가(전문가 1:1 평가)	서면+발표 평가 60점 미만 탈락
23. 7. 21	발표평가(심사단 집단평가)	
23. 7. 26	선정결과 발표	KIRD 홈페이지
23. 6월 말	연구 협약체결 및 사전학습	출연(연) 매칭 포함
23. 7월 초 ~	연구수행	

신청 자격

1.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 사업의 신청가능 전공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회(Review Board)분야” 에서 명시되어 있는 세부 학문 또는 전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접속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분류([NRF_RB](#))

2. 인문학(사회학, 체육학 등) 분야 대학원생 및 수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사업 목적상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연구계획상의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이 이공학분야(한국연구재단 RB)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 분류([NRF_RB](#))

3.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퇴직 등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신청가능한가요?

고용계약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취업자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연구원 권익 증진차원에서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5. 외국 국적 소지 한국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까?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6. 연구수행분야 신청 전에 외부 전문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본 사업의 특성상 외부 전문연구기관에서 일정 시간 연구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 지도교수님과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로부터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동 연구지도형태와 외부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수행을 하는 단독 연구지도형태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료생 및 졸업생의 경우는 단독 연구지도형태만 인정됩니다.

신청 전에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만 기재한 후 연구개시전까지 매칭을 완료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전에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가 정해지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전문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지도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신청자의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분야에 해당하고, 연구기간동안 대학의 지도교수와 동등한 역할 수 있는 분을 지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연구지도자는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가 없으나 연구종료일까지 소속과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1. 지도교수 등 연구지도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도교수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지도교수가 이직한 경우는 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이직한 지도교수를 연구종료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교수 변경 및 이직한 지도교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오니 신분변동 즉시 바로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 재지원자의 경우, 전년도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해도 되는지요?

본 사업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신청과제의 중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연구와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과제로 판단되어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신규지원자의 경우, 대학의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신청하는 연구주제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지도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및 신청한 과제와 본 신청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는 신청자가 독립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 연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지도교수와 **연구계획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표절”**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복과제로 판정**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인건비 계상시 참여율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요?

본 사업은 장애인 석박사생의 전문연구역량을 개발하도록 자체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인건비는 **주 5일 연구수행을 참여율 100%로 하여 실제 연구수행일자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계상**하면 됩니다.

15. 본 사업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3책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3책 5공)임을 뜻합니다.

본 사업도 연구 몰입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위해 **3책 5공 대상과제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선정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1책에 해당됩니다.

16. 연구개시 후 3개월 이전에 연구 중단은 불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연구개시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연구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시 후 상당한 이유가 없이 **연구 중단시, 연구비는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비 반납이 부과된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인건비 및 연구지도수당은 본 사업의 신청요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산정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